

# 인권센터 규정

제정 2022. 3. 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남대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한남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권침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하여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④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인권 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 ⑥ “사건관련인”이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 관계부서의 관리자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으로 다음과 같다.
  - 1.“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2.“가해자”란 피신고인 중에서 센터의 조사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3.“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4.“피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가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지목되어 센터에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 5.“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남대학교의 학칙 또는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과 업무

### 제1절 조직 및 업무

**제4조(센터 및 센터장)** ① 센터는 감사실에 두며, 센터장은 인권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관한 식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직무)** ① 센터에 인권상담관과 성희롱·성폭력상담관을 둔다.

- ② 인권상담관 및 성희롱·성폭력상담관은 인권보호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교직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인권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행위 이외의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 신고 접수, 조사 및 보고

2.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
  3. 인권침해 행위,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표명
  4. 그 밖에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
  5. 구성원의 인권침해 예방교육
- ④ 성희롱·성폭력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상담, 신고 접수, 조사 및 보고, 심리적, 법적, 의료적 구제
  2.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
  3.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⑤ 센터에는 상담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상담원 등을 둘 수 있다.

## 제2절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직원 5인(위원장 포함)
2. 학생 3인(학생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참여)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인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등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절 조사위원회

**제10조(설치)** 센터장은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및 기능)** ①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으로 구성 하되, 남녀 위원의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2. 인권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 등으로부터의 진술 청취

④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 경과 및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 제3장 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구제

**제12조(상담 및 신고)** ① 피해자 또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권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중재)** ① 센터장은 피해자가 신고 후 중재를 요청할 경우, 당사자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지원한다.

② 중재가 성사된 경우 센터장은 각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며 중재 내용의 불이행 시 사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재 내용이 합의하여 이행된 경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4조(직권조사)**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센터장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운영위원회 심의 이전이라도 피해자 및 관계인 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2. 피해자와의 격리 등 공간분리 조치
3. 가해자의 수업 및 업무 배제
4.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안전,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6조(신고의 각하)** ① 운영위원회는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사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4. 신고를 철회한 후 동일한 사안을 다시 신고한 경우
5. 센터의 조사만으로 진위여부를 밝혀내기 어렵거나,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가 각하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허위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18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인에게 사건 접수 및 조사 개시를 고지하고, 관련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시에 신고인에게 더 상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센터장과 조사위원회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한 사건의 조사는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안전보장)** 센터는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과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게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게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④ 당사자는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사전에 통지하고 동반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 1회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재심을 결정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재조사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조사 결과 피신고인에게 법령 및 학내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사건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피신고인 및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2차 피해 방지)** ① 센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②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피해자 등의 신분을 포함한 사건 내용을 노출하거나 이들에게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2.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이나 화해를 중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센터장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하여도 제23조의 징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유지)** 인권침해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 및 관계인의 동의 없이 이들에 관한 제반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가중처벌의 요청)** 센터장은 피신고인이 2차 피해를 가하거나, 유사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3.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4. 기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제척, 기피, 회피)** ① 조사위원과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고인은 조사 및 운영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조사위원 및 운영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전 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각각 그 가부를 결정하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운영위원은 해당 기피신청 내용의 심의 및 의결에서 배제된다.

## 제4장 보칙

**제29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세칙)** 인권센터의 상담, 조사 및 구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